

## 철강대학원 학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6장 장학금	제6장 <u>재정지원제도</u>	-용어변경 반영
제41조(장학금 및 학생조교 운영) ①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<u>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 ② 학생조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	제41조( <u>재정지원</u> ) ①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<u>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</u>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② (현행유지)	-용어변경 반영
제42조(장학금 이중수혜의 금지) <del>장학금의 이중 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다만, 특수한 성격의 장학금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del>	제42조(장학금 이중수혜의 금지) <u>삭제</u>	-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반영